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 1119 호

2013년 7월 26일 금요일

규 칙

- 규칙 제8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 2
- 규칙 제8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16
- 규칙 제8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2

공 고

- 공고 제2013- 1107호 구유재산 매각(만수동 1120-2) 24
- 공고 제2013- 1109호 공인 신조 27
- 공고 제2013- 1117호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 결정·공시 29
- 공고 제2013- 1119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30
- 공고 제2013- 1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 노선)사업 실시계획 재열람 31
- 공고 제2013- 1122호 수용재결 정본(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공시송달 35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36
- 남동구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37

고 시

- 고시 제2013- 64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8
- 고시 제2013- 65호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 41
- 고시 제2013- 66호 도로명 부여 및 폐지 4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7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82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또는 남동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을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은 공무원 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 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주관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총괄부서(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도·통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취급) ① 소송관계 문서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소송관계 서류가 착오로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한 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관리하며, 소송사무의 지휘 등을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문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소송의 수행

제6조(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즉시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 응소, 상소, 반소, 상소포기 및 중재 등의 사유
6. 법령, 판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주 관부서의 장의 의뢰를 받아 업무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호 서식), 해임서(별지 제2호 서식)
2.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 서식)

② 민사합의 사건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직무관련 사건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일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소송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와 다르게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선임 사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 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제출
2. 답변서·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작성·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변론
4.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5. 소송문서의 작성·시행·보고 및 관리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기일·선고기일 등의 출석결과
3. 소송의 진행 중 새로이 발생한 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사건의 상대방 상소에 관한 사항
5. 패소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1조(행정소송 등의 보고) ①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의 소송수행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소(반소)·상소의 제기, 포기
2. 화해·조정·인락·소송탈퇴 및 상소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3. 신청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
4. 국가소송의 경우 청구의 포기·변경 및 소취하 동의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수행하는 소송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승소 판결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 등을 통해 상소심에 대비한다.

③ 패소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와 상소의 이익을 비교하여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제소)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분석·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제16조(반소) 피소된 사건에서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7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상소심의 수행) 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수행에 대하여는 원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3장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제20조(종결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강제집행 신청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취소 후 재처분
2.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3. 패소이유가 법령·제도 등의 결함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법령개선 및 제도개선 건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하여 패소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 및 구상권 행사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
2.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 확정증명원)
4. 인감증명서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6.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7.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8. 각서(별지 제9호 서식)

제4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24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 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취하로 승소간주 확정된 소송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지급된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한 금액
2. 이미 종결된 사건 중 소송비용의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금액

제25조(소송비용 회수업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회수대상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승소가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확정 사건에 대하여 재산 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확보
2. 소송 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
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세외수입으로 징수 및 관리
4.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이행
5.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받는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추진

제26조(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제25조에 따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및 회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이를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1인당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위 소송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지방○○주사 ○○○, 지방○○○○○○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20 . .

피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2호 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고
 피고
- 소송수행자

위 사건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 ○ ○을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 법 원 :
-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 근무하는 지방○○○ ○○○, 지방○○○ ○○○(TEL:○○○-○○○○)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피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 신청시 첨부서류 : 소송위임장, 소송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
○○○, 지방○○○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하기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 소송행위
-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 (3) 재판상의 화해
- (4) 목적물의 수령
-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 (6)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및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20 . .

피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소송대리인 재직증명

- 사건번호 :
- 사 건 명 :
- 당 사 자 : (원 고)
(피 고)
- 법 원 :
- 소송대리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지방○○○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과 지방○○○ ○○○

위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된 상기인들은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위 직에 재직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피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법원 (제○행정부)귀중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송주관 및 용어에 대한 정의, 소송수행 절차와 소송 확정 후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소송수행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 명확화 (제2조)
-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송주관에 사항 정비 (제3조)
- 소송문서 취급·관리 규정 신설 (제4조 및 제5조)
- 소송 수행의 관한 사항 정비 (6조부터 제19조까지)
 - 소송의 착수, 소송수행자 지정,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선임 사항
 - 소송수행자 직무, 소송고지, 판결선고 및 판결서의 조치 사항
 - 제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상소심의 수행 사항
- 소송 확정 후의 조치 사항 정비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소송 종결보고,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임의변제 사항 정비
- 소송비용의 회수 사항 정비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소송비용의 회수대상, 회수업무 및 회수의 포기 사항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7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829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
4. 동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남동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장
7.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의 장
8.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9.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④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지원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남동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에 의해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심 의 의 결 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같이 의결한다. 20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회의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 재
일 시	20 . . .			심의방법			
참 석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현 황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빈곤, 가출, 학업중단,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있어,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적절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지원함은 물론,
- 지역사회 시민과 기관 및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안전망(CYS-net)구축을 통해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제1조)
- 위원회 기능 규정 (제2조)
 -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구성 규정 : 총 10명 이내 (제3조 및 제4조)
 - 위 원 장 : 주민생활국장
 - 부위원장 : 남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 위 원 : 보건행정과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남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인천고용센터 취업지원2과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남동구 청소년쉼터 대표자 등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운영 방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
 - 운영위원회 내 실행위원회 설치함.
 - 구 성 : 위원장 1명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 운 영 :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사항을 지원함.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배 진 교

2013년 7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8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항”을 “제5항”로 하고, 같은 항 “보조금 지원 신청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있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의 전액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5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제4호를 같은 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제5조제3항 중 “제2호”을 “제3호”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제1항”을 “조례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 사업개시(착공)보고서를”을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을 “제6호”으로 하며, 같은 항 “별지”를 “제7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지난 5. 10일 공동주택활성화 등 사업 내용이 신설되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 정비 (제2조제2항)
 - 보조금 지원사업 중 500만원 이하는 전액을 500만원 초과시에는 5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지원으로 변경
 - 중복사업인 경우 한 건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단서신설
 -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대상 신설
 -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 공동주택 정산서 등 제출사항 변경 (제7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07호

구유재산 매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에 부치는 재산표시

순번	토지소재지	토지현황		예정가격(원)	비 고
		지목	면적(㎡)		
1	남동구 만수동 1120-2	대	580.9	2,040,324,700원	

나. 공고기간 : 2013. 7. 22 ~ 7. 25.

다. 입찰기간 : 2013. 7. 26 (10:00) ~ 8. 1 (16:00)

라. 개찰일시 : 2013. 8. 2 (10:00/ 도시관리과 담당자PC)

마. 계약기간 : 개찰일부터 15일내

2. 입찰참여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단독)로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반드시 온비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입찰기간내에 온비드(www.onbid.co.kr)에 제출하여야 하며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방법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인터넷 입찰방법 및 온비드 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1회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자동선택기능)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7. 계약체결 및 대금 납부방법

가. 계약대금납부 등 계약서를 포함한 계약내용의 이행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해약과 동시에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됩니다.

다.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은 우리구에서 발부한 대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봅니다.

라.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잔액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시 매 6개월마다 2년간 균등분할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대금잔액에 대하여 분납이자(년6%)를 부과합니다.

- 마. 잔금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12%~15%)를 징수합니다.
- 바. 잔금을 납부 약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사. 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지분전매가 금지됩니다.
- 아.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후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 가. 매각재산에 대한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 및 경비는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나. 상기필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필지로서 매매대금 완납시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가. 부동산의 명도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은 “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공동입찰자 포함)는 관련법령, 입찰공고사항,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토지이용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반사항 및 매각토지상의 지장물, 지구단위계획(토지활용계약) 등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재산의 현상태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 라. 계약체결이후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또는 대금완납일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 “온비드”의 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계약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3)
- 전자입찰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1588-5321)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09호

공인 신조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인신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인 신조 사유 :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 제정

가. 공인의 최초사용일(공인폐기일) : 2013. 7. 22

나. 신조·폐기 공인명 및 인영 : 신조(8개)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징수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경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채권관리관인		한글전서체 2.0cm×2.0cm	

구 분	공 인 명	인 영	서체 및 규격	비 고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 설관리특별회계채무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 설관리특별회계지출원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 설관리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 설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신 조 공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소래논현구역공공시 설관리특별회계물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17호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 공시

가. 대 상

토 지 소 재 지	당 초 지 가 (원 / ㎡)	조 정 지 가 (원 / ㎡)	비 고
남동구 구월동 846	449,000	476,000	
남동구 구월동 1279-2	1,200,000	1,100,000	
남동구 만수동 424-1	1,390,000	1,360,000	
남동구 장수동 83	92,500	104,000	
남동구 장수동 178	128,000	139,000	
남동구 서창동 23-2	167,000	175,000	
남동구 서창동 24	168,000	177,000	
남동구 남촌동 122-3	188,000	203,000	
남동구 남촌동 122-4	188,000	203,000	
남동구 남촌동 406-24	241,000	243,000	
남동구 수산동 540-2	730,000	544,000	
남동구 논현동 56-4	237,000	320,000	

나. 기 준 일 : 2013년 1월 1일

다. 결정내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2.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032)453-615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7. 26 ~ 8. 10.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구보 등

3. 공고의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납부대상자 : 안*근[인천 부평구 신촌로71-7, 000동 000호(부평동, 네오리치빌)]

다. 부동산의 표시 :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1-8 2층

라. 위반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마. 과징금 : 금70,277,260원(금칠천이십칠만칠천이백육십원정)

바.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4. 납부대상자께서는 2013. 8. 16일까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하고자 합니다.

5. 문 의 처 : 남동구청 토지정보과(☎032-453-248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2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사업 실시계획 열람 ·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경신지구 소로3-3호선 외 1개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 후 열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3), 건설과(☎453-2723)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4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경신지구 소3-3호선, 소1-28호선)
 - 나. 명 칭 : 경신지구 소3-3호선 외 1개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가. 소로3-3호선 B=6.0m, L=190.0m
 - 나. 소로1-28호선 B=10~17.0m, L=6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남동구청장
 -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1008)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관계 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관계	
1	609	도	1,147	50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2	643-18	과	4	4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3	643-19	과	4	4	박**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772				
4	643-20	과	664	664	황**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16동 205호				
5	644-8	목	92	92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131-2				
6	644-7	도	149	149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월가 102동 301호				
7	636-2	전	134	134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34 이삭아파트 101- 501				
8	644-6	대	6	6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월가 102동 301호				
9	643-17	전	15	15	문**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7동 711호				
10	638-5	과	256	256	고**	637				
11	638-8	목	12	12	고**	637				
12	638-10	창	105	105	고**	637				
13	638-7	목	34	34	고**	637				
14	1068-27	도	210	210	국	재무부				
15	635-19	전	90	90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16	635-20	전	59	59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17	635-21	전	106	106	대**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18	1068-6	도	534	48	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계				2,038						

☐ 지장물 조서

조서 번호	소재지	편입 토지	물건의 종류	구 조	단위	수량	물 건 소 유 자		토 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구월동	643-20	수 목	소나무	주	10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황**	인천시 남구 매소홀로 475번길 18	황**
2	구월동	644-8	담 장	디자인웬스	m	17.0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인천시 남동구 운연동 131-2	송**
3	구월동	644-7	정화조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수 목	감나무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담 장	EGI웬스	m	40.0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4	구월동	644-1	담 장	블록	m	8.5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담 장	메쉬웬스	m	22.5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대 문	철제출입문	개	1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창원시 동정동 777 흥한웰가 102동301호	김**외 2인
5	구월동	636-2	수 목	유실수	주	1	인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101-501	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101-501	이**
			수 목	배나무	주	5	인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101-501	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934 이삭아파트101-501	이**
6	구월동	638-5	수 목	배나무	주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7	구월동	638-10	건 물	블럭슬라브	m2	1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대 문	가설판넬	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7	고**
8	구월동	635-19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담 장	철제메쉬	m	5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옹 벽	석 축	m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수 목	조경수	개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수 목	채소	개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수 목	소나무	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대 문	철제메쉬	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외 1인
10	구월동	655-1	수 목	감나무	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배나무	주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11	구월동	655-2	수 목	은행나무	개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단풍나무	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수 목	사철나무	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5	고**
12	구월동	635-21	옹 벽	보강토	m	29.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13	구월동	655-4	건 물	콘크리트	m2	4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49	고**
14	구월동	655-7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담 장	가드웬스	m	26.0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43-11	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3-1122호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2013. 7. 17일자 수용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불명으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 사업의 종류 : 도림3지구 소3-1호선,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일원
4. 공고기간 : 2013. 7. 26 ~ 8. 12.
5. 재결서정본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과(☎032-453-2991)
6. 공시송달내용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정본
7. 공시송달대상 : 관계인
 - 최*은 : 인천 남동구 만수동 272-23
8. 기 타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2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8. 5.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3. 7. 25 ~ 8. 5(12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간석2 -317	형제식당	이*섭	석산로 159, 1층(간석동)	사업자등록폐업	2013.1.31	2013.8.5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8. 5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보건소 공고 제2013-13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관내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한 식품위생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3. 8. 6.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고기간 : 2013. 7. 26 ~ 8. 5(11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연번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일	비고 (말소예정일)
1	일반 음식점	구월2 -215	구월삼계탕	송*숙	용천로 97번길 6, 1층(구월동)	사업자등록폐업	2013.2.16	2013.8.6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13. 8. 5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남동구청장) 또는 재결청(인천광역시장)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 ☎032-453-2623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64호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	결 산						현년도 채무 상환	다음연도 이월내역					
		세입㉡	㉢/ ㉡	세출㉣	㉤/ ㉣	차인잔액㉥ (㉢-㉣)	㉥/ ㉣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487,025,854,310	492,748,562,310	101%	410,310,756,675	84%	82,437,805,635	17%		82,437,805,635	16,471,235,550	2,649,295,480	269,800,000	3,583,441,120	59,464,033,485
일 반 회 계	440,139,041,260	446,994,030,467	102%	390,446,507,926	89%	56,547,522,541	13%		56,547,522,541	15,377,442,950	2,649,295,480	269,800,000	3,578,089,840	34,672,894,271
특 별 회 계	46,886,813,050	45,754,531,843	98%	19,864,248,749	42%	25,890,283,094	55%		25,890,283,094	1,093,792,600			5,351,280	24,791,139,214
기타특별회계	46,886,813,050	45,754,531,843	98%	19,864,248,749	42%	25,890,283,094	55%		25,890,283,094	1,093,792,600			5,351,280	24,791,139,21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2,627,000	776,309,407	100%	728,038,719	94%	48,270,688	6%		48,270,688				5,351,280	42,919,4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0,219,361,000	17,889,160,031	88%	9,000,000,000	45%	8,889,160,031	44%		8,889,160,031					8,889,160,03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5,008,000	123,559,250	118%	1,595,500	2%	121,963,750	116%		121,963,750					121,963,75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591,709,050	592,691,185	100%	326,764,540	55%	265,926,645	45%		265,926,645					265,926,645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76,618,000	3,392,670,941	100%	351,069,300	10%	3,041,601,641	90%		3,041,601,641					3,041,601,641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56,683,000	2,549,947,684	100%	1,062,706,040	42%	1,487,241,644	58%		1,487,241,644	325,667,800				1,161,573,844
기반시설특별회계	482,880,000	484,300,831	100%	201,364,920	42%	282,935,911	59%		282,935,911	260,244,800				22,691,111
주차장특별회계	18,781,927,000	19,945,892,514	106%	8,192,709,730	44%	11,753,182,784	63%		11,753,182,784	507,880,000				11,245,302,784
만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수 결정액㉔	수납액			미수납액 ㉕=㉓-㉖	미수납액처리		비율(%)	
					수납총액 ①	과오납 반환액②	실제수납액 ③=①-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③/㉓	③/㉔
합 계	463,356,536,000	23,669,318,310	487,025,854,310	544,512,190,364	505,365,720,732	12,617,158,422	492,748,562,310	51,763,628,054	3,696,033,810	48,067,594,244	101.2%	90.5%
일 반 회 계	418,565,264,000	21,573,777,260	440,139,041,260	485,577,543,041	459,602,721,349	12,608,690,882	446,994,030,467	38,583,512,574	3,508,410,010	35,075,102,564	101.6%	92.1%
지방세수입	98,462,935,000		98,462,935,000	105,555,293,630	100,042,521,160	206,391,720	99,836,129,440	5,719,164,190	756,216,300	4,962,947,890	101.4%	94.6%
보통세	96,741,935,000		96,741,935,000	101,104,676,850	98,247,932,030	158,139,640	98,089,792,390	3,014,884,460	110,071,660	2,904,812,800	101.4%	97.0%
지난년도수입	1,721,000,000		1,721,000,000	4,450,616,780	1,794,589,130	48,252,080	1,746,337,050	2,704,279,730	646,144,640	2,058,135,090	101.5%	39.2%
세외수입	72,761,089,000	21,573,777,260	94,334,866,260	133,842,740,001	112,868,578,509	11,890,186,892	100,978,391,617	32,864,348,384	2,752,193,710	30,112,154,674	107.0%	75.4%
경상적세외수입	25,621,622,000		25,621,622,000	26,120,615,766	26,080,854,668	95,144,602	25,985,710,066	134,905,700		134,905,700	101.4%	99.5%
임시적세외수입	47,139,467,000	21,573,777,260	68,713,244,260	107,722,124,235	86,787,723,841	11,795,042,290	74,992,681,551	32,729,442,684	2,752,193,710	29,977,248,974	109.1%	69.6%
지방교부세	9,526,287,000		9,526,287,000	8,490,485,000	8,490,485,000		8,490,485,000				89.1%	100.0%
지방교부세	9,526,287,000		9,526,287,000	8,490,485,000	8,490,485,000		8,490,485,000				89.1%	100.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4,132,678,000		34,132,678,000	35,432,678,000	35,432,678,000		35,432,678,000				103.8%	100.0%
조정교부금	34,132,678,000		34,132,678,000	35,432,678,000	35,432,678,000		35,432,678,000				103.8%	100.0%
보조금	203,682,275,000		203,682,275,000	202,256,346,410	202,768,458,680	512,112,270	202,256,346,410				99.3%	100.0%
국고보조금등	128,699,658,000		128,699,658,000	128,002,422,520	128,258,490,700	256,068,180	128,002,422,520				99.5%	100.0%
시·도비보조금등	74,982,617,000		74,982,617,000	74,253,923,890	74,509,967,980	256,044,090	74,253,923,890				99.0%	100.0%
특 별 회 계	44,791,272,000	2,095,541,050	46,886,813,050	58,934,647,323	45,762,999,383	8,467,540	45,754,531,843	13,180,115,480	187,623,800	12,992,491,680	97.6%	77.6%
기타특별회계	44,791,272,000	2,095,541,050	46,886,813,050	58,934,647,323	45,762,999,383	8,467,540	45,754,531,843	13,180,115,480	187,623,800	12,992,491,680	97.6%	77.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2,627,000		772,627,000	1,176,204,637	776,309,407		776,309,407	399,895,230	1,529,280	398,365,950	100.5%	66.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0,219,361,000		20,219,361,000	21,380,138,531	17,889,160,031		17,889,160,031	3,490,978,500		3,490,978,500	88.5 %	83.7%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5,008,000		105,008,000	125,008,890	123,559,250		123,559,250	1,449,640		1,449,640	117.7%	98.8%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98,748,000	92,961,050	591,709,050	592,691,185	592,691,185		592,691,185				100.2%	100.0%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76,618,000		3,376,618,000	3,392,670,941	3,392,670,941		3,392,670,941				100.5%	100.0%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56,683,000		2,556,683,000	2,549,947,684	2,549,947,684		2,549,947,684				99.7%	100.0%
기반시설특별회계	482,880,000		482,880,000	484,300,831	484,300,831		484,300,831				100.3%	100.0%
주차장특별회계	16,779,347,000	2,002,580,000	18,781,927,000	29,233,684,624	19,954,360,054	8,467,540	19,945,892,514	9,287,792,110	186,094,520	9,101,697,590	106.2%	68.2%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㉓	예산성립후 증감액㉔	예산현액 ㉕=㉓+㉔	지출원인 행위액㉖	지출액 ㉗	다음연도 이월액㉘				집행잔액 ㉙=㉕-㉗-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463,356,536,000	23,669,318,310	487,025,854,310	412,700,491,065	410,310,756,675	19,390,331,030	16,471,235,550	2,649,295,480	269,800,000	57,324,766,605
일 반 회 계	418,565,264,000	21,573,777,260	440,139,041,260	392,644,324,316	390,446,507,926	18,296,538,430	15,377,442,950	2,649,295,480	269,800,000	31,395,994,904
일반공공행정	31,465,463,000	2,015,039,420	33,480,502,420	30,909,547,736	30,689,226,636	269,800,000			269,800,000	2,521,475,784
공공질서및안전	2,350,363,000	25,000,000	2,375,363,000	2,319,045,140	1,503,673,860	817,246,280		817,246,280		54,442,860
교육	11,288,588,000		11,288,588,000	11,122,876,980	11,122,876,980					165,711,020
문화및관광	12,701,139,000	3,692,081,720	16,393,220,720	13,118,286,960	12,918,419,040	2,278,222,800	2,272,546,800	5,676,000		1,196,578,880
환경보호	14,530,337,000	1,039,500,000	15,569,837,000	14,093,084,650	14,092,624,650	950,000,000		950,000,000		527,212,350
사회복지	211,782,455,000	441,640,740	212,224,095,740	205,857,500,270	205,321,431,380	2,561,864,610	2,561,864,610			4,340,799,750
보건	10,998,731,000	1,523,941,320	12,522,672,320	11,709,650,080	11,709,644,800					813,027,520
농림해양수산	3,404,540,000	108,000,000	3,512,540,000	2,696,075,300	2,695,818,930	150,000,000	150,000,000			666,721,070
산업 · 중소기업	6,999,483,000	4,163,641,360	11,163,124,360	7,449,592,950	7,374,757,100	3,287,931,000	3,287,931,000			500,436,260
수송및교통	18,728,004,000	4,401,579,170	23,129,583,170	18,312,689,820	18,246,540,520	3,540,297,340	3,475,039,040	65,258,300		1,342,745,310
국토및지역개발	17,070,501,000	4,188,353,530	21,258,854,530	15,988,173,770	15,703,693,370	4,441,176,400	3,630,061,500	811,114,900		1,113,984,760
예비비	17,514,273,000	△25,000,000	17,489,273,000							17,489,273,000
기타	59,731,387,000		59,731,387,000	59,067,800,660	59,067,800,660					663,586,340
특 별 회 계	44,791,272,000	2,095,541,050	46,886,813,050	20,056,166,749	19,864,248,749	1,093,792,600	1,093,792,600			25,928,771,701
기타특별회계	44,791,272,000	2,095,541,050	46,886,813,050	20,056,166,749	19,864,248,749	1,093,792,600	1,093,792,600			25,928,771,7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2,627,000		772,627,000	728,038,719	728,038,719					44,588,281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0,219,361,000		20,219,361,000	9,000,000,000	9,000,000,000					11,219,361,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5,008,000		105,008,000	1,595,500	1,595,500					103,412,50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498,748,000	92,961,050	591,709,050	326,764,540	326,764,540					264,944,510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376,618,000		3,376,618,000	351,069,300	351,069,300					3,025,548,700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556,683,000		2,556,683,000	1,062,706,040	1,062,706,040	325,667,800	325,667,800			1,168,309,160
기반시설특별회계	482,880,000		482,880,000	393,282,920	201,364,920	260,244,800	260,244,800			21,270,280
주차장특별회계	16,779,347,000	2,002,580,000	18,781,927,000	8,192,709,730	8,192,709,730	507,880,000	507,880,000			10,081,337,270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65호

2013년도 예산고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3. 7. 19)에서 의결, 확정된 2013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2013년도 회계별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	비 고
합 계		496,239,827	457,457,110	38,782,717	8.48%	
일 반 회 계		448,520,811	422,959,841	25,560,970	6.04%	
특 별 회 계		47,719,016	34,497,269	13,221,747	38.33%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 지구내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	11,609,000	0	11,609,000	10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61,719	658,699	3,020	0.46%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2,713,709	16,204,687	△3,490,978	△21.5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9,997	129,997	0	0.00%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11,926	315,156	△3,230	△1.02%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144,013	3,134,141	9,872	0.31%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331,573	1,484,289	△152,716	△10.29%	
	기반시설특별회계	91,777	90,300	1,477	1.64%	
	주차장특별회계	17,725,302	12,480,000	5,245,302	42.03%	

2. 일반회계

가. 세입(장관별), 세출(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448,520,811	100.00%	422,959,841	100.00%	25,560,970	6.04%
세입	지방세수입	97,452,675	21.73 %	97,452,675	23.04 %	0	0.00%
	세 외 수 입	76,011,740	16.95 %	66,767,324	15.79 %	9,244,416	13.85%
	경상적세외수입	25,626,983	5.71 %	25,244,744	5.97 %	382,239	1.51%
	임시적세외수입	50,384,757	11.23 %	41,522,580	9.82 %	8,862,177	21.34%
	지방교부세	7,061,640	1.57 %	3,637,731	0.86 %	3,423,909	94.12%
	조정교부금	34,549,068	7.70 %	38,300,000	9.06 %	△3,750,932	△9.79%
	보 조 금	233,445,688	52.05 %	216,802,111	51.26 %	16,643,577	7.68%
	국고보조금등	143,846,715	32.07 %	135,153,278	31.95 %	8,693,437	6.43%
	시도비보조금등	89,598,973	19.98 %	81,648,833	19.30 %	7,950,140	9.74%
	지 방 채	0	0.00	0	0.0	0	0.00
	국내차입금	0	0.00	0	0.0	0	0.00
세출	인 건 비	56,633,897	12.63%	55,859,172	13.21 %	774,725	1.39%
	물 건 비	24,708,358	5.51%	24,218,920	5.73 %	489,438	2.02%
	경 상 이 전	288,837,121	64.40%	276,017,270	65.26 %	12,819,851	4.64%
	자 본 지 출	66,286,729	14.78%	55,568,672	13.14 %	10,718,057	19.29%
	융자및출자	250,000	0.06%	250,000	0.06 %	0	0.00%
	보 전 재 원					0	
	내 부 거 래	1,534,145	0.34%	1,534,145	0.36 %	0	0.00%
	예비비및기타	10,270,561	2.29%	9,511,662	2.25 %	758,899	7.98%

나.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구성비	기정예산액	구성비	증 감	%
합 계		448,520,811	100.00%	422,959,841	100.00%	25,560,970	6.04%
기능별	일반공공행정	40,097,253	8.94%	38,850,767	9.19%	1,246,486	3.21%
	공공질서및안전	2,670,738	0.60%	1,855,916	0.44%	814,822	43.90%
	교 육	11,211,994	2.50%	11,144,390	2.63%	67,604	0.61%
	문화및관광	9,016,629	2.01%	8,656,349	2.05%	360,280	4.16%
	환경보호	18,433,109	4.11%	17,775,970	4.20%	657,139	3.70%
	사회복지	238,566,743	53.19%	225,682,082	53.36%	12,884,661	5.71%
	보 건	11,994,564	2.67%	11,694,220	2.76%	300,344	2.57%
	농림해양수산	3,924,717	0.88%	3,891,803	0.92%	32,914	0.85%
	산업.중소기업	3,052,740	0.68%	1,461,543	0.35%	1,591,197	108.87%
	수송및교통	15,143,653	3.38%	14,341,518	3.39%	802,135	5.59%
	국토및지역개발	22,564,903	5.03%	15,130,069	3.58%	7,434,834	49.14%
	예 비 비	4,997,966	1.11%	6,502,097	1.54%	△1,504,131	△23.13%
	기 타	66,845,802	14.90%	65,973,117	15.60%	872,685	1.32%

3. 특별회계

가. 세입(장관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47,719,016	100.00%	34,497,269	100.00%	13,221,747	38.33%
세 입	지방세수입	0	0.00	0	0.00	0	0.00
	세 외 수 입	47,065,176	98.63%	33,846,449	98.11%	13,218,727	39.05%
	경상적세외수입	3,206,784	6.72%	3,206,784	9.3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43,858,392	91.91%	30,639,665	88.82%	13,218,727	43.14%
	지방교부세	0	0.00	0	0.00	0	0.00
	조정교부금	0	0.00	0	0.00	0	0.00
	보 조 금	653,840	1.37%	650,820	1.89%	3,020	0.46%
	국고보조금등	458,912	0.96%	456,496	1.32%	2,416	0.53%
	시도비보조금등	194,928	0.41%	194,324	0.56%	604	0.31%

나. 성질별 및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
합 계		47,719,016	100.00%	34,497,269	100.00%	13,221,747	38.33%
성 질 별	인 건 비	1,093,655	2.29%	1,092,135	3.17 %	1,520	0.14%
	물 건 비	796,606	1.67%	789,626	2.29 %	6,980	0.88%
	경상이전	929,745	1.95%	929,745	2.70 %	0	0.00%
	자본지출	20,522,646	43.01%	16,892,427	48.97 %	3,630,219	21.49%
	융자및출자		0.00		0.00	0	0.00
	보전재원		0.00		0.00	0	0.00
	내부거래	137,179	0.29%	137,179	0.40 %	0	0.00%
	예비비및기타	24,239,185	50.80%	14,656,157	42.48 %	9,583,028	65.39%
기 능 별	환경보호	12,713,709	26.64 %	16,204,687	46.97 %	△3,490,978	△21.54 %
	사회복지	568,541	1.19 %	567,041	1.64 %	1,500	0.26 %
	수송및교통	17,130,722	35.90 %	11,885,420	34.45 %	5,245,302	44.13 %
	국토및지역개발	16,618,286	34.83 %	5,153,883	14.94 %	11,464,403	222.44 %
	기 타	687,758	1.44 %	686,238	1.99 %	1,520	0.22 %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3-6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외 5건
2.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6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6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3.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가. 도로명주소는 2013. 7. 26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나.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4.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가.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나.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4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1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3-2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18번길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3-3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342번길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7-12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5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47번길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6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8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9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53번길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86-10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개동로38번길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7-17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36번길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3-6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04-4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22-1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5-3	2013.07.26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에정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서창2지구 근생3,3-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6-2	20120328	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서창남로 16-2번 기초 구간에 위치하여 16-2를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2-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3 16번길	23	20091116	남동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서로316번길 2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7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2 68번길	23-15	20091116	구월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구월남로268번길 23-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3-1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 로	10	20091116	소래역로 남쪽에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역남로 10번 기초 구간에 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87-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69 번길	6-1 7	20091116	은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70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은봉로269번길 6-17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17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43-1,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257-5	20090706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2013.07.26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문화로 257-5번 기초 구간에 위치하여 257-5를 건물번호로 부여	